

수입 또는 수출을 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,

나. 피신청인들은 위 1항 기재 물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과 그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.

2.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

3.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.

신청 취지

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것 외에는, 주문과 같다.

이유

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어 이유 있으므로,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금 1,000만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05. 7. 21.

재판장

판사

이원일



판사

민소영

